

대구대학교-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협약서

대구대학교(이하 “대구대”라 한다)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(이하 “대구식약청”이라 한다)은 상호 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상호발전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본 운영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제3조 (협력분야)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1. 식품·의약품의 시험분석 분야의 기술협력, 학술정보 교류 및 자문
2. 식품·의약품의 시험분석 분야의 학술회의 공동개최
3. 대학생 현장교육 프로그램 제공

제4조 (인력활용 및 교류)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활용 및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방법은 양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 (학술정보 교류)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학술 및 기술정보의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.

제6조 (자문, 기타) ① 양 기관은 상호간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②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 (협약기간)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상호간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 단, 본 협정의 종결을 원하거나 수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종결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(비용부담)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0조 (운영)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협의 하에 업무책임자(coordinator)를 둘 수 있다.

제11조 (기타)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2조 (효력) 본 양해각서는 대구식약청장과 대구대학교 총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된다.

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시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12월 28일



대구대학교

총 장 김 상 호

김 상 호

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청 장 홍 현 우

홍 현 우